

기안자	제부국관제과 원 유 호	전화번호	202	공 보	필 요	불 필 요
제안제분담인	관제 과장	제부 국장	제 부시장	시 장		
		전 결				
발 조 자				보 존		
서 명				년 한		
기년 월일	1964. 8. 3	시년 월일	1964. 8. 4	문 제 관	경 제 기 관	
분류기호 문서번호	시 제관1264,2					
경 수 참	유 실 조			발 신		
제 부 시유건물(절거조건)매각제본						
1. 다음포서시유건물은 시립아동병원수사로 사용하여본건물인						
바 급한 동제지상해 증축공사를하게되므로 다음과같이 절거조건부로 매각하고자						
합니다.						
가, 매 각제산의포서						
종로구사적동한1번지 목조와중 8평						
나, 매각방법, 일반정정협참						
다, 공고방법, 별첨공고안을당시게시판에게시공고함						
라, 공고제제기간, 1964.8.4,부터5월간						
마, 입찰등록, 시서,구서남서필증윤철부아어동등록함						
바, 입찰일시, 1964. 8. 10. 10.00						
사, 세입 기록, (관)제산주업(양)분용제산매각제 달						

제 5권
결구
의합
호

국장전
시합

고

36

확 시
과
방
법
서
신

월 4

“공고안”

서울특별시공고제 36호

시유건물(철거조건)매각입찰공고

1. 물건 의 표시 · 서울특별시종로구사직동산1번지
목조와중 건평8평
2. 입찰일시 서기1964년 8월 10일 10시
3. 입찰장소 당시 재무국관저과
4. 입찰방법 일반경정입찰
5. 입찰등록 서기1964년 8월 8일 13시 7까지 등록자의시세,국세
납세필 중을필부하여등록한다.
6. 입찰보증금, 입찰금액의 1%이상입찰금이나시중금융기관보증수표
를납부한다.
7. 철거및대금납부,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월이내에대금을납부하
고10월이내에완전철거하여정거를하여야하며 이를
위약하였을 때에는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
은 당시세업으로귀속조치하겠음

서기 1964년 8월 4일

서울특별시장은

24

34

2-2

44